김포시 공고 제2020-2539호

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5(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)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09월 24일

김 포 시 장 

〈공시송달내역〉		
1. 행정처분의 제목		공장설립승인 취소
2. 당사자	성명(명칭)	상명산업(대표 이훈상,이의상,이건상,이익상,이규상,이희찬)
	주 소	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산110-2번지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5,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함
4. 행정처분 내용		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
5.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	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5제3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
6. 처분일		2020.9.23.
6. 공고기간		2020.9.24. ~ 2020.10.24.
7. 기타사항 ○ 위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와는 별도로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(제소기간)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○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 기업지원과(☏031-980-2894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		